

국토교통부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 연장 공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혁신 프리미어 1000」 개요

○ (혁신 프리미어의 정의) 혁신활동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신제품 개발, 매출증대 등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 현재는 성장초기단계라도 핵심기술 등을 보유하여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 (범위·기준) 영위·계획사업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부합하면서 금융지원 결격사유가 없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 [별표1]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개편) 품목 리스트, [별표2]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별 설명서

○ (지원기간) 선정시~익년말(금번 선정시, '27년말까지 지원)

※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되더라도, 여신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금융지원) 혁신 프리미어 기업 전용상품을 신설하여 現 정책금융 기관의 상품 중 최고 수준의 우대를 지원

- (비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해외판로 개척·박람회 참여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세무·회계·인사·노무 등) 등 비금융 지원 강화

* [별표3] 혁신 프리미어 1000 금융·비금융지원 주요 프로그램 참조

2

신청자격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으로, 혁신성·성장성 보유하고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이상 충족하는 기업**(붙임1)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 ①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
- ②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상시 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 ③ 국토교통 분야 산업부문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 신청자격 제외 사유 》

주체	결격사유
부처	1.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 지원반	1. 최근 1년내('25.1.1.~제출일)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2.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된 경우 3. 최근 회계연도('25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 의견인 경우 제외) 4. 최근 회계연도('25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5. 최근 회계연도상 3년('23~'25년) 평균 매출증감 Δ 10% 이상인 기업 6. 최근 회계연도상 3년('23~'25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 단, 5,6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이 경우 투자실적 증명을 위한 투자확인서, 주주명부 등 제출 필요) ※ 적격투자기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7)에 해당하는 기관(1.벤처투자회사(구 창업투자회사), 2.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 3.벤처투자조합(VC펀드), 4.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및 투자조합, 5.은행권(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6.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7.기타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최근 회계연도 : 2025년 / 최근 3개 회계연도 : 2023년 ~ 2025년

3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규모) 국토교통 분야 중소·중견기업 20개
- (평가 방법) 2단계 평가
 - (1단계) 제출서류, 신청자격, 재무상태, 「혁신성장 공동기준」 부합여부 등 요건 심사
 - ※ 결격 여부, 최소 요건 적정성(신용등급, 경영위험, 안정성, 유동성 등)
 - (2단계) 혁신성/성장가능성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혁신성 (60)	혁신활동의 우수성	- 신제품, 서비스 개발 등 기업주력 활동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부합 여부 -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발굴, 신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 실적 - 기술개발 조직 및 개발인력 확보 현황 및 실적의 우수성	30
	기술의 우수성	-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 - 핵심기술의 우위성(혁신성, 차별성, 모방난이도) - 진입장벽, 시장경쟁력, 산업적 중요성, 수출가능성 등	30
성장 가능성 (40)	기업 자원 확보 노력	-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현황 -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 인재 확보를 위한 고용창출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
	성장 잠재력	- 최근 3년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 매출증대 및 시장 창출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지속성장 가능성	-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활동 및 관련 노력	5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추천기업으로 선정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6. 4.14.(화) ~ 5.14.(목)
- 접수기간 : '26. 4.20.(월) ~ 5.14.(목)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기업(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법인 인감 또는 직인 날인)
 - 전략계획서(6페이지 이내)
- 2단계 평가대상 기업 제출서류(추후안내)
 - 최근 3년 표준 재무제표 증명(2023년~2025년) ※해당시
 - ※ 정부24(<http://www.gov.kr>)에서 발급받은 최근 90일 이내 문서
 - 신기술 인증서, 혁신제품 지정서, 매출실적 등 신청자격 증빙사본(해당시)
 - 민간투자 또는 적격투자기관 투자 관련 서류(해당시)
 - ※ 민간투자, 적격투자기관 투자를 입증할 투자계약서, 주금납입증명서, 주주 명부, 투자확인서 등 투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발급받지 못할 경우 신청기업에 제출요청 가능
- 접수방법 :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포털(hub.kaia.re.kr)에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기업성장지원실
고승범 선임연구원(031-389-6568)

5 기타사항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선정절차 및 선정후 제출서류 이외 금융·비금융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금융지원(대출·보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선정 후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을 따른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됨

○ 5대 중점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을 70% 이상 선정 예정

5대 중점 전략분야	주요 산업(부문)
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 원전·바이오·인공지능· 핵심광물(신설)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나노·수소·컨텐츠·ICT·해양수산·교통· 항공우주·탄소소재·양자·방위·농식품·통신· 딥사이언스·태양전지·물산업· 풍력산업(신설)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	산업위기대응·자동차부품·조선·철강·정유·섬유· 항만장비·광학·플라스틱·시멘트·석유화학·태양광
④ 유니콘 벤처·중소 ·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⑤ 대외여건 약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기계·전기산업 및 기업 경영애로 해소

붙임1

신청자격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선택요건 3개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구분	내용	증빙자료	해당 여부		
			Y	N	
기본요건	혁신성장 공동기준 포함품목 취급	-	✓		
선택요건	1. 혁신성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	투자확인서		
	2. 성장성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상시 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최근 3개년 재무제표		
	3. 국토교통 분야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3-1. 건설·교통·물류 신기술 또는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해당 신기술 또는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인증 또는 지정서, 매출실적 증빙자료		
		3-2.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우수사업자 지정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3-3. 국토교통부 소관 법정 품질인증 확보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관련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3-4.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해당 연구성과물***의 사업화를 통해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과제수행) 확인서, 매출실적 증빙자료		
3-5. 국토교통부 소관 시범/실증사업 참여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 기본·선택요건 해당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기간 범위 내 유효해야하며, 요건의 입증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신청서에 첨부해야함)

* 국토교통부 소관 법정 품질인증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 의해 인증받은 제품·기술 보유기업

**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종료 5년 이내 기업

*** 유형적성과물(시제품, 시작품 등), 무형적성과물(특허권, S/W, 저작권, 실용실안 등)

****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소관 실국에서 추진하는 시범/실증사업 참여중이거나 참여한 기업